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병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426

발의연월일: 2024. 8. 30.

발 의 자:김병기・이기헌・조 국

모경종 • 윤건영 • 민병덕

박상혁 • 윤종군 • 정동영

박 정・이개호・한준호

임미애 · 정성호 · 황운하
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는 정부, 행정기관 등에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때 서면뿐 아니라 전자문서나 전산망에 입력한 상태 등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.

그러나 서류 등의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전자문서 형태나 전자시스템 등을 이용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, 현실적으로 행정기관 등에 대한 서류 등의 제출 요구가 국회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법에 전자시스템을 통한 제출 요구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현행법상 서류 등을 포함한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규정에 전 자시스템의 이용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자료 요구 및 제출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28조).

법률 제 호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8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제1항에 따라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서류등의 제출 요구 및 제출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구축·운영하는 전자시스템을 이용하여 요구할 수 있고 그 전자시스템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28조(보고ㆍ서류 등의 제출	제128조(보고ㆍ서류 등의 제출
요구) ① ~ ⑤ (생 략)	요구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⑥ 제1항에 따라 서류등의 제
	출을 요구할 때에는 서류등의
	제출 요구 및 제출을 효율적으
	로 하기 위하여 구축・운영하
	는 전자시스템을 이용하여 요
	구할 수 있고 그 전자시스템으
	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
	<u>다.</u>
<u>⑥</u> (생 략)	<u>⑦</u> (현행 제6항과 같음)